

[일련번호 : 1]

# 경기도체육회

## 기관경고

[제 목] 국도비 예결산 회계표기 부적정

[소 속 기 관] 용인시체육회

[내 용]

### 1. 업무개요

용인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sup>1)</sup>, 제36조(예산의 편성)<sup>2)</sup> 및 「용인시체육회 정관」 제12조(총회의 기능), 제18조(이사회 구성 및 기능), 제41조(재원), 제46조(예산편성 및 결산)에 따라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여가선용 및 복지향상 등에 이바지하며 우수한 경기자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함으로써 체육회 사업 발전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보조 지원시책을 충실하게 구현해야 하고 매년 회계연도 시작 전에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치는 등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집행 업무를 하고 한해 지출한 예산을 총회에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정관」 제41조(재원), 제46조(예산편성 및 결산)

1)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 ②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2)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

-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세입·세출의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

따라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도록 되어있으며, 「정관」 제12조(총회의 기능), 제18조(이사회 구성 및 기능), 제46조(예산편성 및 결산)에 따라 사업결과 및 결산은 총회에서 의결하고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의결 받도록 되어 있고, 매 회계연도 시작 전에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의 및 조정을 거쳐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체육회는 20\*\*년도부터 20\*\*년도까지 회계연도 시작과 종료를 위해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를 개최하였으나 시비만 심의·의결하여 편성하고 대한체육회 및 경기도체육회 보조금으로 받는 수입은 심의·의결 없이 집행하였고 결산에서 보조금(국·도·시비)에 대한 결산심의를 의결하였다.

#### [조치사항] 용인시체육회장은

감사 지적사항을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 보고하고 20\*\*년도부터 지원받는 국·도비 예산 및 결산에서 국·도비 예산의 수입 및 지출에 대한 회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라며, 체육회 정관, 회계규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회계담당부서 교육을 실시하고 본회 공정감사실에 20\*\*년 국도비 예산편성 및 회계담당부서 교육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

# 경기도체육회

## 주의조치

[제 목] 계약·회계업무처리 부적정

[소 속 기 관] 용인시체육회

[내 용]

### 1. 업무개요

용인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는 국도비를 비롯한 모든 보조금을 집행할 때에는 의사결정을 시작으로 원인행위를 결정하고 지출 할 때 적법한 절차와 증빙을 근거로 회계를 처리하고 관리해야 한다.

###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보조금 집행 및 관리에 있어 체육회 「회계규정」(이하 “회계규정”이라 한다.) 제4조(일반원칙), 제42조(지출원인 행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부가가치세법」 제31조(거래징수)<sup>3)</sup>, 제32조(세금계산서 등)<sup>4)</sup>,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1조(지방보조금 사용 방법)<sup>5)</sup>에 의거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31조(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⑧ “생략”

5) 「보조금 관리기준」 제11조(지방보조금 사용 방법) ① “생략”

- ② 지방보조금 지출거래 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③~⑥ “생략”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라 한다),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공사·물품·용역이 필요할 시에는 관련 법률을 확인하여 절차에 맞게 계약이 이루어져야 하며, 계약행위는 「지방계약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하지만 체육회는 다음과 같은 계약 및 회계처리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 가. 분할계약

국·도비 보조금으로 용품 등을 구매할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추정금액 2000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용역을 실시할 경우 수의계약을 실시하여 하며,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것을 대상별이나 시기별로 분할해서는 아니된다.

**[표1] 분할구매 현황**

순	사업명	업체명	집행내역	금액
1	20** ●●●●	○○○○○	육상용품(허들 등 15개)	*,***,***
2	20** ●●●●	△△△△	피복비(육상 자켓 등 5개)	*,***,***
3	20** ●●●●	ㄷㄷㄷㄷ	피복비(유도 패딩 등 6개)	*,***,***
4	20** ●●●●	ㄹㄹㄹㄹ	피복비(태권도 패딩 등 9개)	*,***,***
5	20** ●●●●	◆◆◆◆	조정용품(싱글스컬 등 2개)	** ,***,***
6	20** ●●●●	○○○○○	씨름용품(파스 등 3개)	***,***
7	20** ●●●●	♣♣♣♣	볼링용품(볼링공)	** ,***,***
8	20** ●●●●	*****	씨름용품(마우스피스)	*,***,***
9	20** ●●●●	∞∞∞∞	피복비(팬티 등 4개)	*,***,***

순	사업명	업체명	집행내역	금액
10	20** ●●●●	⊕⊕⊕⊕	태권도용품(도복 등 2개)	*,***,***
11	20** ●●●●	◆◆◆◆	태권도용품(심박측정기)	***,***
12	20** ●●●●	◆◆◆◆	유도용품(유도복)	*,***,***
13	20** ●●●●	◎◎◎◎	테이핑용품	*,***,***
14	20** ●●●●	☺☺☺☺	검도용품(호구)	** ,***,***
15	20** ●●●●	◎◎◎◎	육상용품(창 등 5개)	*,***,***
16	20** ◆◆◆◆	☐☐☐☐	운동기구(증량 머신)	** ,***,***
17	20** ◆◆◆◆	☐☐☐☐	증량바 등(9개)	*,***,***
18	20** ◆◆◆◆	☺☺☺☺	테이핑용품	*,***,***
19	20** ◆◆◆◆	▲▲▲▲	운동화 구입	*,***,***
20	20** ◆◆◆◆	∞∞∞∞	훈련용품 구입	*,***,***
21	20** ◆◆◆◆	∞∞∞∞	구급용품 및 훈련용품 구입	*,***,***
22	20** ⊕⊕⊕⊕	☺☺☺☺	운동용품(축구 등 )	*,***,***
23	20** ⊕⊕⊕⊕	∞∞∞∞	서틀콕 등	***,***
24	20** ⊕⊕⊕⊕	☎☎☎☎	골프용품	***,***
25	20** ⊕⊕⊕⊕	☕☕☕☕	뉴스포츠용품	*,***,***
26	20** ⊕⊕⊕⊕	☆☆☆☆	탁구용품	***,***

### 나. 보조금 변경 승인 전 지출 부적정

용인시체육회는 ▲▲▲▲을 실시하기 위해 피복비와 운영비로 보조금을 신청하였으나 집행과정에서 변동이 발생하여 본회를 통해 사업 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사업변경 승인통보<sup>6)</sup>를 받기 전인 20\*\*.\*\*.\*\*.일자로 피복비를 지출하였다.

6) 경기도체육회 종목지역파트-2831(2020.09.17.)

[표2] 사업변경 승인전 집행 내역

순	사업명	업체명	집행내역	금액
1	20** ▲▲▲▲	⊗⊗⊗⊗	피복비	*,***,***

다. 기타 증빙서류 미비

체육회는 국도비 보조금 집행에 필요한 서류를 증빙으로 지출하여야 하나 비교견적 업체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하는 등 지출에 대한 증빙이 누락되는 등 제대로 확인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표3] 기타 증빙서류 미비 현황

순	사업명	업체명	집행내역	금액	누락서류
1	20** ▲▲▲▲	◆◆◆◆	유도용품	*,***,***	이체증
2	20** ▲▲▲▲	⊙⊙⊙⊙	운동화	*,***,***	수령증
3	20** ▲▲▲▲	∞∞∞∞	훈련용품	*,***,***	통장사본
4	20** ▲▲▲▲	∞∞∞∞	구급용품 등	*,***,***	통장사본
5	20** ▲▲▲▲	++++	보험료	***,***	전자세금계산서
6	20** ▲▲▲▲	■ ■ ■ ■	상패	*,***,***	비교견적업체 폐업
7	20** ▲▲▲▲	■ ■ ■ ■	테니스공	*,***,***	비교견적업체 폐업
8	20** ▲▲▲▲	■ ■ ■ ■	네트	***,***	비교견적업체 폐업
9	20** ▲▲▲▲	■ ■ ■ ■	기념품	*,***,***	비교견적업체 폐업
10	20** ▲▲▲▲	■ ■ ■ ■	테니스공	*,***,***	비교견적업체 폐업
11	20** ▲▲▲▲	■ ■ ■ ■	테니스공	*,***,***	비교견적업체 폐업

[조 치 사 항] 용인시체육회장은

국도비를 비롯한 사업비 전반적인 계약 및 회계 관리를 위해 관련자(직원)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현재 지적된 사항에 대해 조속히 처리하여 본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3]

# 경기도체육회

## 개선조치

[제 목] 규정 정비 및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제도 마련

[소 속 기 관] 용인시체육회

[내 용]

### 1. 업무개요

용인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지방체육회)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으며, 용인시로부터 사무국 운영비 등을 지원받고, 경기도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로부터 각종 사업비 등을 지원받아 용인시민의 건강증진과 체육진흥을 위해 활동하는 공공성을 지닌 법정법인단체이다.

###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체육회는 「용인시 체육진흥 조례」 제8조(체육회 등에 대한 운영비 지원)에 의거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관서운영 기본경비 등 운영비를 용인시로부터 지원받고 있으며, 각 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은 사전에 용인시와 협의하게 되어있다. 이에 따라 체육회는 「직무규정」을 통해 용인시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인건비, 운영비 등)의 효율적인 집행과 체계적인 조직 관리를 해야 하며, 주무관청인 용인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

또한 체육회는 「직무규정」 제16조~제16조의4에 의거,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사건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사건처리

매뉴얼 등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 누구나 피해를 입었을 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 가. 「직무규정」내 정원표 미제정

체육회의 정기종합감사 수감자료 및 「직무규정」 검토결과, 체육회는 사무국 정원 관련하여 「직무규정」 내 별도 정원기준을 두지 않고, 회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어 명확한 규정과 절차에 의한 체계적인 인사관리(채용, 승진 등)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용인 시로부터 지원받는 보조금이 수반되나 관련 조례에 의거 충분한 사전 협의가 없거나 단순 구두 협의만으로 진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동 내용은 “\*\*.\*\*월 용인시 특정감사에도 동일하게 지적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제도 부재

체육회는 「직무규정」 내 직장 내 괴롭힘 금지관련 행위, 예방교육, 조치에 관한 조항을 운영하고 있으나, 피해자 구제를 위한 구체적인 사건처리절차 매뉴얼(규정, 지침 등) 및 사건 예방을 위한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지 않다.

#### [조 치 사 항] 용인시체육회장은

주무관청인 용인시 체육진흥과와 업무협의를 통해 기관의 정원기준을 마련하여 기관의 체계적인 인사관리와 시보조금의 명확한 사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피해받는 임직원을 보호하고 사건 예방을 위해  
본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내규」 등을 참고하여 사건처리절차 매뉴얼  
(규정, 지침 등)을 수립하고,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4]

# 경기도체육회

## 개선조치

[제 목] 공직유관단체 미등록 및 이해충돌방지제도 미운영

[소 속 기 관] 용인시체육회

[내 용]

### 1. 업무개요

용인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지방체육회)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으며, 용인시로부터 사무국 운영비 등을 지원받고, 경기도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로부터 각종 사업비 등을 지원받아 용인시민의 건강증진과 체육진흥을 위해 활동하는 공공성을 지닌 법정법인단체이다.

###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의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규모, 임원선임 방법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등을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으며,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는 범위는 「동법 시행령」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의 범위 등)제1항제3호에 의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10억원 이상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등으로 명시되어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기관·단체가 공직유관단체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되어있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감사기간(“\*\*.\*\*.\*~\*\*.”) 현재 체육회는 [표1]과 같이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연간 10억원 이상 보조를 받는 단체이나,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지정 및 인사혁신처장이 고시하는 공직유관단체로서 지위를 갖고 있지 않다.

**[표1] 용인시체육회 결산현황(2020~2022년)**

(단위:원)

재 원 별	2022년 결산	2021년 결산	2020년 결산
국비	***,***,000	***,***,000	***,***,000
도비	***,***,000	***,***,000	***,***,000
도교육청	***,***,000	***,***,000	***,***,000
시비 등	*,***,***,000	*,***,***,000	*,***,***,000

※용인시체육회 정기종합감사 수감자료 결산 현황 재구성

이에 따라 체육회는 공직자가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내용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 [조 치 사 항] 용인시체육회장은

기관의 공정성과 공공성 담보를 위해 주무관청인 용인시 체육진흥과 등과 업무연찬을 통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지정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지정 이후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참고하여 기관에 맞는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수립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